

#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 발급이 의무화됩니다!



1장의 보증서로 1개 현장의 모든 건설기계 보증

- ✓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됩니다. (1번)
- ✓ 조합원은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현장별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1번, 2번)
- ✓ 현장별보증서 발급 후 개별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. (2번)
- ✓ 다만, 소규모공사의 경우 기존처럼 대여계약별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(3번)

##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

현장별보증  
(원칙)



대여계약별보증  
(예외-소규모공사)



### 01 현장별보증이 무엇인가요?

- ▶ 현장별보증이란 조합원이 시공하는 1개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▶ 현장별보증과 기존 대여계약별 보증은 이렇게 다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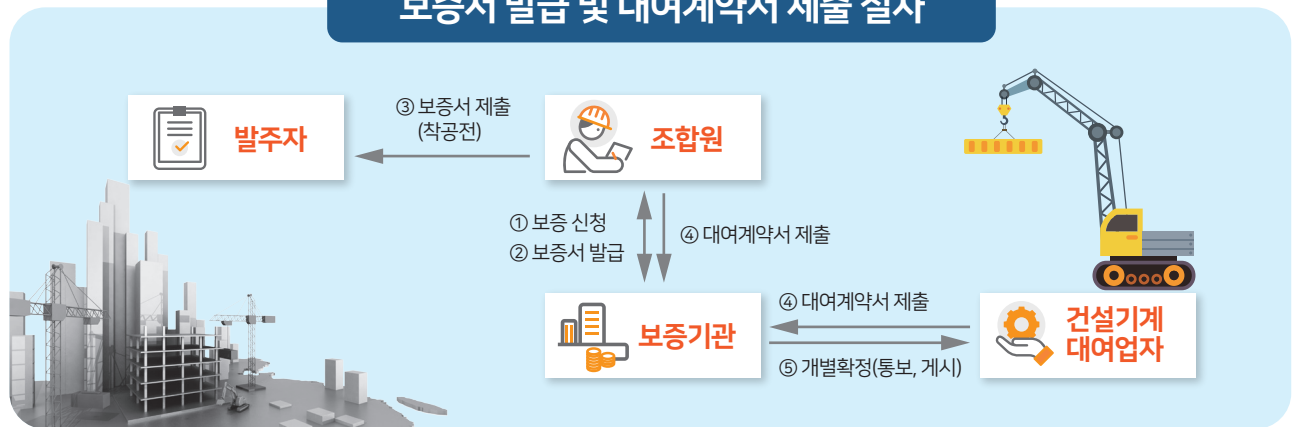
#### <현장별 보증과 대여계약별 보증의 차이점>

구 분	현장별 보증	대여계약별 보증(기존보증)
보증대상	현장의 모든 건설기계	각각의 개별 건설기계
보증발급	현장별로 1장 발급	대여 계약별로 개별 발급
제출시기	착공 전 1회 제출	대여계약 체결 후 건별 제출
보 상	현장의 모든 건설기계 (대여계약서 제출 후 조합의 개별 확정건에 한함)	각각의 개별 건설기계

## 02 대여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?

- ▶ 조합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여계약체결 후 대여계약서를 현장별 보증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▶ 대여계약서는 조합 인터넷 창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▶ 조합은 제출된 대여계약서를 심사하여 해당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, 조합은 보증채권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

### 보증서 발급 및 대여계약서 제출 절차



## 03 모든 현장에서 현장별보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?

- ▶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내 용
원 도 급	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
하 도 급	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
공 통	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

## 04 현장별보증 또는 대여계약별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?

건설산업기본법	내 용
제 81 조	시정명령 등
제 82 조	영업정지(6개월이내) 또는 과징금(1억 원 이하)

※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, 건설업자,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[건설법 제68조의3 제2항]

자세한 상담은 거래지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